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 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영동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의 적용 범위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된 절차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무국외연수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약칭 정비 및 공무국외연수 적용범위 보완(안 제2조)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정비 및 위원 수당지급 근거 신설(안 제5조)
- 연수보고서 보고 기한 조정(안 제7조)
- 근거 규정명 변경(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공무국외연수등”이란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능력 제고 등을 위해 해외연수를 하거나 외국의 기관 등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 제목“(적용대상)”을“(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국외연수 등(이하 “공무국외연수 등”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을 “공무국외연수등의 적용범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연수하는 경우
5.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

연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영동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
로 국외연수하는 경우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연수
등”을 각각 “공무국외연수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또는 지방의
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관련 연수 등을 계획하는”을 “계획하는”으로 하
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계획하는 경우

제3조제2항제4호(중전의 제3호) 본문 중 “공무국외연수 등”을 “공무국외
연수등”으로, “의원일”을 “의원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공무국외연수등에서 한 차례만 제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공무국외연수 등을”을 “공무국외연수등”로, “공
무국외연수 등 계획서(이 조례에서)”를 “공무국외연수등 계획서(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연수 등”을 “공무국외
연수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연수 등 심사위원회(이 조례에
서)”를 “공무국외연수등 심사위원회(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국외연수와 관련한 사항

제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 외의”를 “의원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심사위원은 의원인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한다.

2의2. 민간위원은 의장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중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공무국외연수 등”을 “공무국외연수등”으로, “세부적”을 “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국외연수 등”을 “공무국외연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무국외연수 등을 하는”을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공무국외연수 등을”을 “공무국외연수등을”로, “공무국외연수 등 보고서(이 조례에서)”를 “공무국외연수등 보고서(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국외연수 등”을 각각 “공무국외연수등”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나 소관 또는 소속”을 “60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무국외연수 이후 처음 개최하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연수보고서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공개한다”를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국외연수 등”을 각각 “공무국외연수등”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무국외연수 등”을 “공무국외연수등”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회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조(적용대상)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국외연수 등(이하 “공무국외연수 등”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 능력향상 도모, 외국의 해당 사례견학·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우수시책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해외연수 2. 외국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교류행사와 관련되는 해당 외국방문 3.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거나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국 	<p>제1조의2(정의) “공무국외연수등”이란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능력 제고 등을 위해 해외연수를 하거나 외국의 기관 등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적용범위) 공무국외연수등의 적용범위는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연수하는 경우

제회의에 참가

4. (생략)

5. 그 밖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허가할 수 있는 국외활동

<신설>

제3조(허가 및 제한) ① 공무국외연수 등은 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또는 의장이 허가한다. 이 경우 해당 연수계획서 등에 대하여 미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연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이나 1명으로 또는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관련 연수 등을 계획하는 경우

<신설>

4. (현행과 같음)

5.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 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연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영동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하는 경우

제3조(허가 및 제한) ① 공무국외연수등-----

-----.

② -----

공무국외연수등-----
-----.

1. (현행과 같음)

2. -----
----- 계획하는 -----

3.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

3. 이미 공무국외연수 등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일 경우. 다만, 제한횟수는 다음 공무국외연수 등에서 한 차례만 한정한다.

제4조(연수계획서) ① 공무국외연수 등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연수 등 계획서(이 조례에서 “연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연수계획서에는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③ (생략)

제5조(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연수계획서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영동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등 심사위원회(이 조례에서

에 계획하는 경우

4. --- 공무국외연수등-----

----- 의원인
--. 이 경우 다음 공무국외연수등에서 한 차례만 제한한다.

제4조(연수계획서) ① 공무국외연수등을 -----

-- 공무국외연수등 계획서(이하 -----

---. -----
-----.

② ----- 공무국외연수등-----
-----.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위원회) ① -----

----- 공무국외연수등 심사위원회(이하 -----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4. 제출되는 연수보고서의 처음 연수계획서와 일치성·효과성 및 해당 경비의 정산(부당 사용된 정산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의장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외연수와 관련한 사항

<삭제>

② -----

-----.

1. (현행과 같음)
2. 심사위원은 의원인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한다.

2의2. 민간위원은 의장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3. 제2호 외의 위원은 의장이 회의마다 해당 심사안건과 관계 없는 의원으로 지명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생략)

③ (생략)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략)

4. 삭제

5.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제6조(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원국외연수 등의 효율적 심사를

3. 의원인 -----

-----.

4. -----
-----.

----- 전임위원-----.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5. -----
----- 위원회의 의결-----.

⑤ 위원회의 위원중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사) ① ----- 공무원국외연수등-----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연수 계획서 또는 연수보고서를 제출한 의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세부적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연수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의장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무국외연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연수보고서 등) ① 공무국외연수 등을 마친 의원은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연수 등 보고서(이 조례에서 “연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연수보고서에는 공무국외연수 등을 실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4. (생략)

----- 세
부 -----.

② ----- 공무국외연수
등-----
-----.

③ -----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
-----.

제7조(연수보고서 등) ① 공무국외연수 등을 -----

-- 공무국외연수 등 보고서(이
하 -----

-----.

-----.

② ----- 공무국외연수
등-----
-----.

- 1. ~ 4.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공무국외연수 등을 마친 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나 소관 또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해당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연수보고서에 대해서도 군민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르되, “연수계획서”는 “연수보고서”로 본다.

제8조(경비 책정·사용 등) ① 공무국외연수 등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한으로 하며, 해당 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 편성기준」의 지급범위에서 책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 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경비를 추가 지급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의원이 제2조제4호에 따라

③ ----- 공무국외연수등-----
 ----- 60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
 -----.

다만, 60일 이내에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무국외연수 이후 처음 개최하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
 -----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제8조(경비 책정·사용 등) ① 공무국외연수등-----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무국외연수 등에 참가할 경우 해당 경비는 군수가 지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 공무국외연수 등의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된 경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산 금액 등을 확정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은 해당 반납금액을 여입(餘入) 조치한다.

⑤ 공무국외연수 등의 경비 책정·사용, 국외여비의 정산·여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9조(결과활용) ① 의장은 의원이 공무국외연수 등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된 의정발전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의회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

공무국외연수등-----

-----.

④ -----
----- 공무국외연수
등-----

-----.
-----.

⑤ 공무국외연수등-----

-----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9조(결과활용) ① -----
----- 공무국외연수등-----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회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은

또는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의회규칙으로 정한다.